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장

MADFRY CHICKEN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120100627] [www.madfry.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2년 11월 21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년 11월 19일]

[매드후라이치킨]

정 보 공 개 서

[(주)에스씨에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에스씨에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801호]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525-4949][가맹사업 담당부서 : 가맹사업부]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525-4239][가맹사업 안내전화번호 : 02-525-4949]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주)에스씨에프	매드후라이치킨 외 1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801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대표팩스
	2005년 07월 14일	2005년 07월 25일	이신천	02-525-4949	02-525-4239
	법인등록번호	110111-3268996	사업자등록번호	214-87-74816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내이사	이신천/ (주)에스씨에프	매드후라이치킨 외 1개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801호		
		대표자	대표전화	대표팩스	
		이신천	02-525-4949	02-525-423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매드후라이치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브랜드 명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
매드후라이치킨	매드후라이치킨00점 (해당 지역명 표기)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1 참조)
(단위:천원/VAT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4,136	284,845	-250,709	44,779	-41,604	-36,321
2022년	34,423	318,918	-284,495	21,621	-44,787	-33,785
2023년	45,092	381,411	-336,319	20,279	-52,013	-51,853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편앤조이오덴사게 외에 매드후라이치킨을 경영하고 있으나 영업표지별로 매출액을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상기 2개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외에 다른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의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신천	사내이사	2005~현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호/이름	사 업 명	기 간	사업 내용
가맹 본부	(주)에스씨 에프	편앤조이오뎅사개 (20080100141)	2005년 4월 ~ 현재	퓨전요리주점
가맹 본부	(주)에스씨 에프	이주사목로청 (20171192)	2017년 9월 ~ 2020년 12월	주점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1) 영업표지 관련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MAD FRY	영업 표지	출원일 2010. 10. 08 등록일 2011. 09. 28	출원번호 4020100051795 등록번호 4008824440000	이신천	2021. 09. 28 (2021. 09. 28)
MAD FRY CHICK EN	영업 표지	출원일 2012. 07. 25 등록일 2013. 07. 16	출원번호 4020120047443 등록번호 4009825500000	이신천	2023. 07. 16 (2023. 07. 16)

본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는 (주)에스씨에프의 대표자로서 소유자로부터 본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당사의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의 매드후라이치킨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0년 11월 20일입니다.

2. 매드후라이치킨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스씨에프	매드 후라이치킨	이신천	2005.03.09-2011.0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7-5 동명빌딩 3층
(주)에스씨에프	매드 후라이치킨	이신천	2011.06 ~ 2013.0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9-2 서초에클라트 708호
(주)에스씨에프	매드 후라이치킨	이신천	2013.01 ~ 2017.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8, 2층
(주)에스씨에프	매드 후라이치킨	이신천	2017.11 ~ 2021.1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57, 2층
(주)에스씨에프	매드 후라이치킨	이신천	2021.12 ~ 2024.01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1, 403호
(주)에스씨에프	매드 후라이치킨	이신천	2024.1 ~ 현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801호

3. [매드후라이치킨]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매드후라이치킨	치킨	치킨 및 주류 일절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매드후라이치킨의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2	12	0	9	9	0	10	10	0
서울	3	3	0	3	3	0	2	2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1	1	0	1	1	0
울산	1	1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6	6	0	4	4	0	7	7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1	1	0	1	1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1	1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바로 전 3년간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8	0	0	6	0	12
2022	12	1	0	4	0	9
2023	9	3	0	2	0	10

6. 매드후라이치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매드후라이치킨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에스 씨에프	편앤조이 오뎅사게	20080100141	주점	6/0	2/0	2/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상한)		연간 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매출액	면적 3.3㎡	상한	면적 3.3㎡	하한	면적 3.3㎡	
전체	10	396,258	11,876	710,052	17,751	96,156	4,807	10곳중 5곳 산출
서울	2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부산	0	-	-	-	-	-	-	-
대구	0	-	-	-	-	-	-	-
인천	0	-	-	-	-	-	-	-
광주	0	-	-	-	-	-	-	-
대전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울산	0	-	-	-	-	-	-	-
세종	0	-	-	-	-	-	-	-

경기	7	207,196	8,463	285,284	14,264	96,156	4,807	5곳 미만
강원	0	-	-	-	-	-	-	-
충북	0	-	-	-	-	-	-	-
충남	0	-	-	-	-	-	-	-
전북	0	-	-	-	-	-	-	-
전남	0	-	-	-	-	-	-	-
경북	0	-	-	-	-	-	-	-
경남	0	-	-	-	-	-	-	-
제주	0	-	-	-	-	-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POS를 기초로 하여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6개월이하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며 표에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수 10곳 중 3개월 미만 또는 알 수 없는 매출액을 가진 5개 점포의 경우 제외한 실제 5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8.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매드후라이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0	158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천원,부가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연중	1,320	1,320	-	-
광고	TV,신문,잡지 등		1,320	1,320	-	-
판촉	사은품,전단지 등		-	-	-	-

당사는 매드후라이치킨 외에 편앤조이오덴사계 등을 경영하고 있어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지출 비용을 영업표지별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별도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 상품명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에스씨에프	-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 내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30일 정도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홀 매장의 경우

(단위:천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신규	가맹비	5,500	계약체결 시	영업 개시 전 해지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 인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교육비	2,200		교육후 반환안됨	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양수	가맹비	2,750	계약체결 시	영업 개시 전 해지	OPEN전 :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비	2,200		교육후 반환안됨	OPEN후 :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② 배달 매장의 경우

(단위:천원/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가맹비	5,500	계약체결 시	영업 개시 전 해지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 인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교육비	1,100		교육후 반환안됨	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 귀하가 개점 전 추가 교육을 원하는 경우 1인당 5,500(단위:천원/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예치가맹금은 당사가 체결한 서울보증보험(주)의 예치가맹금 반환보증으로 대체하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습니다.

① 홀 매장의 경우

구분	금액(단위:천원/VAT포함)
합계	7,700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② 배달 매장의 경우

구분	금액(단위:천원/VAT포함)
합계	6,600
가맹비	5,500
교육비	1,1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홀 매장의 경우

(단위:천원/VAT포함/66㎡기준)

구분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0,060			-	-
인테리어	35,200	1,760	1) 계약금 : 총 지급대금의 10% → 가맹계약 체결시 2) 중도금 : 총 지급대금의 60% → 인테리어 시작일 3) 잔금 : 총 지급대금의 30% → 인테리어 완료 및 초도물류 입고 전	인테리어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시공시 인테리어비용의 10% 감리비 지급
의탁자	6,600	330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주방집기	11,660	583			
간판	3,300	165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초도상품	약 5,500		오픈 1일 전	오픈이전까지 계약해지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철거, 전기승압, 가스, 냉난방기, 상하수도, 화장실, 오디오, TV, 정수기, 어닝, 오븐기(이탈리아제 안젤로포) 등				

② 배달 매장의 경우

(단위:천원/VAT포함/33㎡기준)

구 분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33,550			-	-
인테리어	16,500	1650	1) 계약금 : 총 지급대금의 10% → 가맹계약 체결시 2) 중도금 : 총 지급대금의 60% → 인테리어 시작일 3) 잔금 : 총 지급대금의 30% → 인테리어 완료 및 초도물류 입고 전	인테리어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시공시 인테리어비용의 10% 감리비 지급
간판	3,300	330			
주방기기(필수)	7,150	715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주방기물	1,100	110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초도상품	약 5,500		오픈 1일 전	오픈이전까지 계약해지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철거, 전기승압, 가스, 냉난방기, 상하수도, 화장실, 오디오, TV, 정수기, 어닝, 오븐기(이탈리아제 안젤로포)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제한없음	한정자산자, 금치산자가 아닐 것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종업원	제한없음	만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천원/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가맹본부	홀 매장 35평 미만:165 35평 이상:220 배달 매장 110	매월	후불로 반환 안됨	후불로 반환 안됨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반환불가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후불제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협의	제작실비 제외후	-
교육훈련비 (수시교육, 특별 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	제작실비 제외 후	VII. 참고
POS사용료	협력업체 (미지정)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4%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로열티는 물가인상 및 경제여건의 변경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 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의 평균 차액가맹금 산정은 2023년 매출 및 매입원장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 * 당사는 매드후라이치킨과 편앤조이오딩사께 가맹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매출 및 매입원장을 토대로 추정 산정하였습니다.
- * 당사는 매드후라이치킨 일부 가맹점과 편앤조이오딩사께 가맹점 매출액을 알 수 없어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비율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본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하며, 년 4회 이상 가맹점의 매출상황 및 회계원장 등을 "갑"이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본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본사"의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본사"가 판매증대를 위하여 영업행위에 관련된 판매실적, 판매동향, 제품반응, 소비자 정보 등 제반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사업장소, 대표자 및 점포관리자 인적 사항 등 사업자 등록상 또는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본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및 지적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

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갑”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수가맹비(교육비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

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사용에 해당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매드후라이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별첨2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첨2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매드후라이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4]	당사에서 지정한 메뉴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상품공급 중단 또는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오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언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언)가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권장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메뉴별 권장가격은 [별첨4]와 같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전문점	매드후라이치킨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을 중심으로 직경 500m 단, 학교 앞 상권을 학교별로 구분하며 8차선 대로변 상권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상권은 분리된 상권으로 한다.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편앤조이 오뎅사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

* 당사는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매드후라이치킨]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갱신 시에도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계약서 제6조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2)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거절 사유(계약서 제6조 제2항)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 14조 제 2항에 따른 로열티를 매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하며 만약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4) 계약종료 및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계약서 제33조 각항)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에게 허위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편앤조이 오덴사계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개월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조달(사입)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 고객 판매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소비자판매가격을 설

정하거나 판매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없이 5일 이상 점포운영을 중단하거나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법령의 요청 또는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가맹점이 폐점된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3조 3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3조 3항

③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3조 2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3조 2항
○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33조 2항

- ④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4조 제2항)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 등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원할 때에는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③ 양도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양도의 의사표시를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④ 가맹본부는 ②, ③의 통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

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⑤ 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맹금을 포기하며, 양수인은 양수가맹비(교육비포함)를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⑦ 상속인은 양수인과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정의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리 경영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의 존속기간 및 계약종료 후 2년동안 귀하가 매드후라이치킨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치킨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영업시간의 제한 내용 :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 수는 2명(20평 기준)이며,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및 위생 상태, 조리상태, 서비스 상태,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매드후라이치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에서 개별 진행			가맹점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진행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 가맹점사업자가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경우 광고 및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한 후 가맹본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은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사가 제공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 조문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2조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제2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제3항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이천만원(W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귀하가 제3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백만원(W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합계		25일	[IV.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상담	문의, 희망지역 접수, 담당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즉시	
점포개발/상권분석	희망지역 결정, 시장조사, 입지지역 분석, 확정	필요시	
가맹점 계약	개설승인, 가맹계약서 계약체결, 계약서 1부 보관	정보공개서 제공후 15일	
가맹금 지급	가맹비 입금	계약서 작성 후 즉시	
도면미팅	도면 확정 및 총 건적산출 계약금 지급	1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20일	
교육실시	개점 전 교육 실시	3일	
오픈점검	재료 입점, 최종 오픈상황 점검	3일	
오픈	영업개시	즉시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용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시: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시: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 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해당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매드후라이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회사소개, 음식가공 등	실습교육, 개별 및 집단강의	개점 전까지	필수
수시교육	신메뉴 가공 등	실습교육	협의	필수
특별교육	필요시	실습교육	-	필요시, 자율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매드후라이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24시간 (3일)	홀 매장 :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2인 기준)
		배달 매장 : 1,100	최초 계약시 이수 (1인 기준)
수시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필요시 산정	-

※ 귀하가 개점 전 1인 추가 교육을 원하시는 경우 1인당 5,500(단위:천원/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주체는 가맹점사업자(필수) 및 기타인원(협의)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개점 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오픈이 불가하거나 개점이 지연될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개점 이후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점포평가 반영 및 재계약시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별첨 3

<필수공급상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메뉴 및 권장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6

(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 본인은 가맹본부 (주)에스씨에프로부터 매드후라이치킨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
 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

-----간인 후 절취-----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 본인은 가맹본부 (주)에스씨에프로부터 매드후라이치킨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
 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